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8
----------	--------

제출연월일: 2023년 1월 일

제출자: 강서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강서구민이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범 시설물 설치를 지원하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구민의 안전을 위한 방범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제1항 신설)
- 방범시설의 설치 비용 지원 시,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의 경우 재난이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외부로 탈출하기 용이한 시설이어야 함을 명시 (안 제9조 제2항 신설)

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 시 서울강서경찰서 범죄예방 진단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이 연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 (안 제 11조 제2항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 건축법 제53조의 2, 서울특별시 범죄 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9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2.12.7. ~ 2022.12.27.) 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방범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범시설(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범시설의 설치에 한정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방범시설은 재난 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실내에서 외부로 탈출하기 용이하도록 제작된 방범시설이어야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서울강서경찰서의 범죄예방 진단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u>① (생 략)</u> <u><신 설></u></p>	<p>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현행 제1항과 같음) <u>제9조(방법시설 등 설치 지원) ①</u> <u>구청장은 방법시설 등의 설치에</u> <u>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u> <u>를 지원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방법시설(출입</u> <u>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시설의</u> <u>설치에 한정한다)의 설치에 필</u> <u>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u> <u>방법시설은 재난 또는 화재가</u> <u>발생할 경우 실내에서 외부로</u> <u>탈출하기 용이하도록 제작된 방</u> <u>법시설이어야 한다.</u></p>
<p><u>제9조 (생 략)</u></p>	<p><u>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u></p>
<p><u>제10조(협력체계 구축) (생 략)</u> <u><신 설></u></p>	<p><u>제11조(협력체계 구축) ① (현행</u> <u>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u> <u>② 제1항과 관련하여 서울강서</u> <u>경찰서의 범죄예방 진단 및 분</u> <u>석에 관한 사항이 연계될 수 있</u> <u>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u>제11조 (생 략)</u></p>	<p><u>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u></p>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신설에 따라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 개정안 제9조 신설에 따라 침입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방범시설 등의 설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침입범죄에 취약한 구체적인 설치지역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방범시설 구매 · 설치 시 방범시설의 종류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는 바,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성 명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담당: 행정6급 고지희)
연락처	02-2600-6843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평 가 번 호	2022-53				
자 치 법 규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7급	성 명	김완주
입안주무부서	도시디자인과	통보(조치)일		2022. 12. 26.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일부개정 조례안 전부		원안 동의		없음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강서구민이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범 시설물 설치를 지원하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 가. 구민의 안전을 위한 방범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제1항 신설)
- 나. 방범시설의 설치 비용 지원 시,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의 경우 재난이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외부로 탈출하기 용이한 시설이어야 함을 명시 (안 제9조 제2항 신설)
- 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 시 서울강서경찰서 범죄예방 진단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이 연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 (안 제11조 제2항 신설)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방범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서울강서053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도시디자인과	
	담당자명	고지희	전화번호 02-2600-684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2월 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도시디자인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안'은 강서구민이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법 시설물 설치를 지원하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주요 개정내용(방법시설 설치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안소현/02-2600-6762)			
도시디자인과장 귀하			

「지방자치법」**제28조(조례)**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건축법」**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제9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 ① 시장은 방범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② 제1항에 따라 방범시설(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범시설의 설치에 한정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방범시설은 재난 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실내에서 외부로 탈출하기 용이하도록 제작된 방범시설이어야 한다. <신설 2022.4.28>